



서울고등법원

제 18 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16182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최성권

피고, 피항소인

1. 군산농협협동조합

군산시 번영로 162 (조촌동, 군산시농협본소)

대표자 조합장 박형기





2. 남이농업협동조합

충북 청원군 남이면 청남로 1207 (외천리)

대표자 조합장 이길웅

3. 동탄농업협동조합

화성시 10용사로 567 (반송동, 동탄농협 종합청사)

대표자 조합장 임봉식

4. 북부산농업협동조합

부산 북구 덕천1길 18 (덕천동)

대표자 조합장 이승걸

5. 북서울농업협동조합

서울 도봉구 해등로 166 (쌍문동 불부농현)

대표자 조합장 최경비

6. 야산노인 혈도증후군

아산시 산로구 예술광장로 75 (성포동 아산노혁 협동조합)

대표자·주한자·박경식

피고들의 속속대리의 범문범의 (유한) 태평양

단답변호사 고지록

제 1 식 판 결 선웅중안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가합19880 판결

별 롤 족 결 2014. 7. 25.

관 결 선 고

2014. 9. 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원고에게 같은 목록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¹⁾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이하 '3.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판 단

가. 선택 부분의 표기를 하지 않아 비용 부담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을 제74 내지 17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부대비용 부담조항의 체크박스에 별도로 표시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1) 별지 목록 제 3, 4항 기재 대출기관은 피고 군산농업협동조합이 아닌 제1심 공동피고 '군산원예농업협동조합'임에도, 원고 전 상기는 이 부분까지 항소 상대방을 피고 군산농업협동조합으로 삼아 항소를 제기하였다.



들이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뒤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부담한다는 인식 아래 이를 남부한 이상,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부대비용 부담조항에 따라 원고들이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기본약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부담한 부대비용 중 담보목적물 조사비용은 이 사건 기본약관에 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 구체화된 약관으로서 우선 적용되는 이 사건 표준약관에 기한 것이기도 하므로, 설령 이 사건 기본약관이 구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표준약관까지 모두 무효로 되지 않는 이상 피고들이 담보목적물 조사비용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본약관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부대비용 부담조항의 약관성 인정 여부 및 그 효력

이 사건 부대비용 부담조항은 피고들이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그 조항에서 정한 선택 항목의 범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구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이 규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대비용 부담조항의 내용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피고들과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그 비용 부담자 및 부담 정도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대비용 부담조항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약 내용이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합의에 의한 개별약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부대비용 부담조항이 구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해



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이 사건 표준약관 개정 전후의 사정, 이 사건 부대비용 부담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과 그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불공정약관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법 규정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표준약관 중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의 부담주체를 선택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지하고 개정 표준약관에 대한 사용권장 처분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약관조항이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약관조항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대비용 부담조항에 의하여 원고들이 부담한 인지세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인겸

기인겸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www.nscourt.go.kr

판정을 위한 QR코드

판사

한소영

한소영



판사

신종오

신종오





정본입니다.

2014. 9. 5.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서동락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